금융감독원	**보 도 참 고**	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

보도	2024. 12. 31.(화) 조간	배포	2024. 12. 30.(월)

담당부서	상품심사판매분석국 보장상품팀	책임자	팀 장	송상욱	(02-3145-8242)
		담당자	조사역	이만영	(02-3145-8247)

금융소비자의 권익 제고 및 민원 예방을 위해 보험상품 표준약관·표준사업방법서가 개정됩니다.

주요 내용

□ **금융감독원**은 보험금 대리청구시 **전자적 인증방식**을 **도입**하고, **단체사망보험**에 가입한 **근로자**의 **보험금 수령권**을 **제고**하는 등

○ 보험소비자에게 **불이익**하거나, **불합리한**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**보험상품 표준약관*** 및 **표준사업방법서****를 개정합니다.

*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**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

개정사항 주요내용

㉮ **보험금 대리청구시 전자적 인증방식 신설**

○ **(현행)** 표준약관은 자녀가 부모님 등의 **보험금**을 **대리청구**할 경우 **인감증명서**(부모님) 등을 보험사에 **서면**으로 **제출**토록 규정하여, **주민센터** 및 보험사에 직접 **방문**해야 하는 **불편함**이 있었습니다.

○ **(개선)** 보험금 **대리청구**시 **핸드폰**을 이용한 **전자적 인증**(예: 모바일인증)으로 **인감증명서** 등을 **대신**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**개선**하였습니다.

㉯ **단체사망보험 수익자 지정방식 개선**

○ **(현행)** 기업이 수익자인 **단체보험 계약**에서, 업무외 사고로 **근로자**가 **사망**한 경우 **기업**이 근로자의 **사망보험금**을 전액 **수취**함에 따라, 근로자 **유족** 및 **기업**간에 **보험금** 관련 **분쟁**이 종종 발생하였습니다.

○ **(개선)** 단체사망보험 계약시 '**업무외 사유로 인한 사망보험금**'은 **근로자**를 보험금 **수익자**로 **의무지정**토록 하여, 근로자의 **유족**이 **보험사**에 직접 **보험금**을 **청구**하여 **수령**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㉰ **직업변경시 정산금 분할납부 방안 마련**

○ **(현행)** 상해보험에서 **직업**이 **위험** 직종으로 **변경**될 경우 보험계약자는 **책임준비금 정산금**을 **보험사**에 **납부**하여야 하는데, **표준약관**은 이를 **'일시납'**으로만 **납부**토록 **규정**하여 보험계약자에게 **부담**이 되었습니다.

○ **(개선)** 직업 또는 직무 변경시 발생되는 책임준비금 **정산금**을 **일시납 뿐만** 아니라 '**잔여 보험료 납입기간**' 또는 '**5년**' 중 긴 기간 동안 **분할 납부**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.

㉱ **직권해지시 해약환급금 지연이자 계산방식 신설**

○ **(현행)**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**보험계약**을 **해지**(직권해지)할 경우 **해지일**부터 해약환급금 **지급일**까지의 **지연이자** 계산방식이 표준약관에 **규정되지 않아** 보험사별로 계산방식이 **상이**하였습니다.

○ **(개선) 지연이자**를 **보험계약대출 이자율**로 계산하는 등 표준약관에 직권해지시 **해약환급금**의 **지연이자** 계산방식을 **신설**하였습니다.

㉲ **계약전 알릴의무 고지대상 기간 명확화**

○ **(현행)**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**과거 병력** 등을 보험사에 **고지**하여야 하나, **표준사업방법서**에 **고지대상 기간**(예: 직전 3개월)에 대한 명확한 **설명**이 **없어** 보험계약자의 **혼란**이 **초래**되었습니다.

○ **(개선)** 표준사업방법서에 **고지대상 기간**에 대한 명확한 **설명**(예: 4.1일의 '최근 3개월 이내'는 1.1일부터 4.1일까지)과 **예시**를 **신설**하였습니다.

1 주요 개정사항

가 보험금 대리청구시 전자적 인증방식 신설 (표준약관 개선)

□ **(현황 및 문제점)** 현행 **표준약관**은 자녀가 부모님의 **보험금**을 **대리청구**할 경우 부모님의 **인감증명서** 또는 **본인서명사실확인서**를 **서면**으로 제출하도록 **규정**하고 있습니다.

○ 이에 보험사가 제공하는 **모바일 앱*** 등을 통해 **보험금 대리청구** 시에도 주민센터 및 보험사에 **대면**으로 **방문**해야하는 **불편함**이 지속되었습니다.

* 일부 보험사는 모바일 앱을 통한 타인의 보험금 대리청구 서비스 제공 중

□ **(개선)** 보험금 청구 **편의성 제고**를 위해 표준약관 상 **보험금 대리청구** 제출서류에 **인감증명서** 이외 **전자적 인증 방식**도 **추가**하여

○ 타인의 **보험금**을 **대리청구**할 경우 **핸드폰**을 이용한 **전자적 인증**(예: 모바일인증)으로 **인감증명서** 등을 **대신**할 수 있도록 **개선**하였습니다.

○ 향후 **모바일** 등을 통한 **대리청구 서비스**가 많은 보험사로 **확산*** 되어 보험소비자의 **보험금 청구 편의성**이 **증대**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* 코로나 시기('22년) 중 주민센터 방문이 곤란하여 모바일 인증을 통한 보험금 대리청구가 일부 허용되었으나, 표준약관 미개정으로 아직 많은 보험사는 동 서비스 미제공

모바일 보험금 대리청구 절차도(예시)

나 단체사망보험 보험수익자 지정방식 개선 (표준사업방법서 개선)

□ **(현황 및 문제점) 기업** 등(5인 이상 단체)이 가입하는 **단체보험**은 **근로자**의 **사망, 후유장애, 실손의료비** 등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으로, **근로자** 또는 **기업***으로 **보험수익자 지정**이 가능합니다.

* **상법**(§735의3③)상 기업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**단체규약**이 있을 경우 **근로자**의 **서면동의 없이** '**근로자**를 **피보험자**'로 하고 '**기업**을 **수익자**'로 하는 **단체사망보험 가입 가능**

○ 그러나 **보험수익자**가 근로자가 아닌 **기업**(또는 사업주)으로 **지정***되는 경우, **근로자**가 퇴근 이후 **업무외 사고**로 **사망**하더라도 **기업**이 근로자의 **사망보험금**을 **수령**하게 되고

* '23년말 단체보험계약 보유건수는 176만건으로, 그 중 기업이 수익자인 계약은 41만건

○ 기업이 근로자의 **사망보험금**을 유족에게 전혀 **지급**하지 **않을** 경우 **근로자의 유족** 및 **기업**간 **사망보험금** 관련 **다툼**이 발생하였습니다.

단체보험의 보험금 수령 구조(기업이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인 경우)

□ **(개선)**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**단체사망보험*** 계약시 **업무외 사고**로 인한 **사망보험금은 근로자**를 **보험수익자**로 **의무지정**하여 **근로자**의 **유족****이 보험사에 직접 **보험금**을 **청구**하여 **수령**하도록 하였습니다.

*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근로관계와 무관한 상품은 적용대상이 아니며, 사망담보 이외의 담보는 현행과 같이 기업이 보험수익자로 지정 가능

** 판례는 단체보험계약에서 업무외 재해로 인한 보험금은 피보험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 의사에 부합한다고 판시(2007다70285)

○ 이를 통해 **기업**(단체)이 보험사로부터 근로자의 **사망보험금**을 **수령**한 후 이를 **근로자**의 **유족**에게 전혀 **지급하지 않는** 등 **불공정한 사례**를 **방지**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*

* 기 계약된 단체사망보험의 보험수익자는 계약체결시 약관에 따라 결정(기업 또는 근로자)되며, 금번 제도개선 사항이 소급 적용되지 않음

제도개선 후 단체사망보험 수익자 지정 예시

보험수익자 / 보장담보	기업(보험계약자)	근로자(피보험자)
업무상재해	○	○
업무외재해	×	

다 직업 변경시 준비금 정산액 분할납부 방안마련 (표준약관 개선)

□ **(현황 및 문제점) 보험계약자**는 **보험기간 중**에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 등 **사고위험***이 **변동**되면 이를 **보험사**에 **통지**하고,

* (예시) 직업변경(사무직→건설기계 운전사), 직무변경(사무직→현장 기술직) 등

○ 보험사가 **직업 변경**을 **승낙**하면, **위험변동 후 보험료**가 **증가**(또는 감소)되고, 보험계약자는 **책임준비금**의 **차액**을 **정산***(납부·환불)해야 합니다.

* 피보험자가 **위험이 큰** 직종으로 이직시 **정산액을** 보험사에 **납부**하고, **위험이 작은** 직종으로 이직시 보험사로부터 **정산액을 환불**받음

○ 그러나, 현행 **표준약관**은 책임준비금 차액의 **'일시납' 정산만 허용**하고 있어, 보험계약자는 많게는 수백만원*에 달하는 **정산액**을 **일시납**으로 **납부**해야 하는 **부담**이 **지속**되었습니다.

* '23년 중 직업변경으로 인한 최대 준비금 정산액은 913만원

피보험자 위험증가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증액(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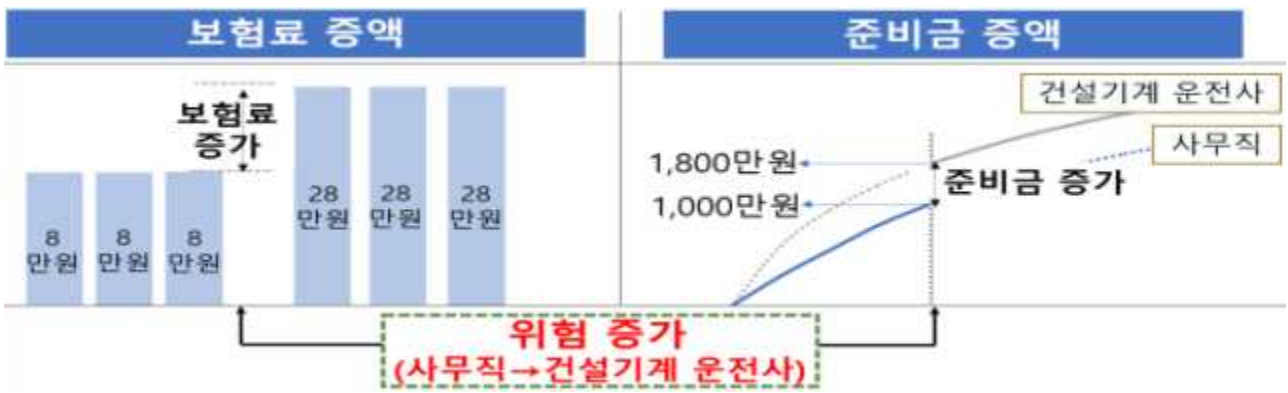

□ **(개선)** 보험계약자의 **직업 변경**으로 인한 **책임준비금 정산액**을 일시납 이외에 **분할납부***로도 정산할 수 있도록 **표준약관**을 **개선**하였습니다.

* '잔여 보험료 납입기간'과 '5년' 중 긴 기간 동안 증액보험료에 합산하여 분할 납부(갱신형 보험은 제외, 세부 기준은 회사별로 상이 가능, 분납금액에 대해 평균공시이율로 이자 가산)

○ 아울러, 현재 **상해보험** 등*에 **가입**되어 있는 **보험계약자**도 직업 변경시 **분할납부 선택권**이 **부여**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* '23년 말 기준 상해·질병보험 보유계약 건은 약 9,998만건

제도개선후 선택권(②) 추가 예시

구 분	직업변경 前	직업변경 後	
		①일시납+보험료조정	②보험료조정
보험료	**8만원** (과거 5년 납입중)	**28만원** (장래 14년 납입)	**33만원** (장래 14년 납입)
준비금정산액	-	**816만원***	-

* 제도개선 이전에는 816만원을 일시에 정산해야 하였으나, 제도개선 이후에는 정산액 발생시 분할납 가능(기존에 가입한 계약에서도 직업변경시 분할납 선택 가능)

라 보험사 직권해지시 해약환급금 지연이자 계산방식 신설 (표준약관 개선)

□ **(현황 및 문제점)** 보험계약이 해지될 경우 보험사는 **해약환급금**에 대해 **"해지청구일~지급일" 기간**의 **지연이자***를 **부리**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.

*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을 보다 빨리 지급토록 하기 위한 장치

○ 현행 표준약관에는 보험계약자 **해지의사**에 따른 **해지**(임의해지)의 경우 **적립이율**(계약대출이율) 등 **지연이자 계산기준**을 정하고 있으나,

○ **고지의무 위반** 등으로 **보험사**가 **계약**을 **해지**(직권해지)할 경우에 대한 지연이자 **계산기준**은 **규정**하고 있지 **않아**, 보험사별로 **지연이자 계산 방식이 상이**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.

□ **(개선)** 등기우편 등 **해지표시**가 **보험계약자** 등에게 **전달된 날***을 ①**이자 기산일**로 하고, **적립이율**은 **임의해지**시와 같은 ②**계약대출이율**을 **적용토록** 표준약관에 **기준**을 **신설**하였습니다.

* 대법원 2000. 1. 28. 선고 99다50712 판결 中 "해지의 의사표시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자(또는 대리인)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며, 그 의사표시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"

○ 보험사별로 상이한 직권해지시 **이자계산** 방식을 **명확화**하여 이로 인한 불필요한 **분쟁 예방**을 기대합니다.

개선 이후 해약환급금(계약자적립액) 적립이율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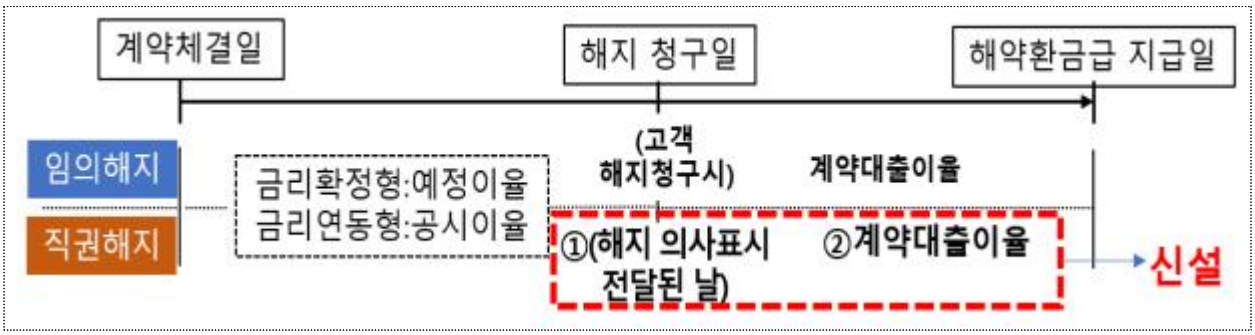

마 계약전 알릴의무 고지대상기간 명확화 (표준사업방법서 개선)

□ **(현황 및 문제점)** 보험가입자는 '**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**(고지사항)'으로 '**정해진 기간 이내**'(고지대상 기간)의 **과거 병력**을 보험사에 **고지**해야 합니다.

○ 그러나, 표준사업방법서에 **고지대상 기간**(예: 직전 3개월)에 대한 **설명**이 **불명확**하여 고지대상 기간의 ①**시작일**과 ②**종료일**(청약일 포함 여부)에 대한 가입자의 **혼선** 및 **분쟁***이 **지속**되었습니다.

* (예) 피보험자는 **'24.7.8일** 내분비대사내과에서 **제1형 당뇨병**에 대해 **합병증 검사 필요소견**을 듣고 **'24.7.8일은 3개월이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채 '24.10.8일**에 **간편심사보험** 가입하였으나, 보험사는 **'21.7.8일도 고지기간**으로 **판단**

□ **(개선) 대법원 판례** 등을 참고하여 **과거병력 고지대상 기간**에 대한 **명확한 설명***을 제시하고, 관련 **도표**를 신설하였습니다.

* 이 청약서에서 '최근 ○개월 이내(◆년 이내)'는 청약일의 ○개월 전일(◆년 전일)부터 청약일까지를 의미합니다.(예를 들어 청약일이 4월 1일인 경우 '최근 3개월 이내'는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)

○ 표준사업방법서상 **고지대상 기간 명확화**로 **소비자 이해도**가 **제고**되고, **고지의무 불이행** 관련 불필요한 **민원**도 **감소**할 것으로 **전망**됩니다.

고지대상기간 관련 도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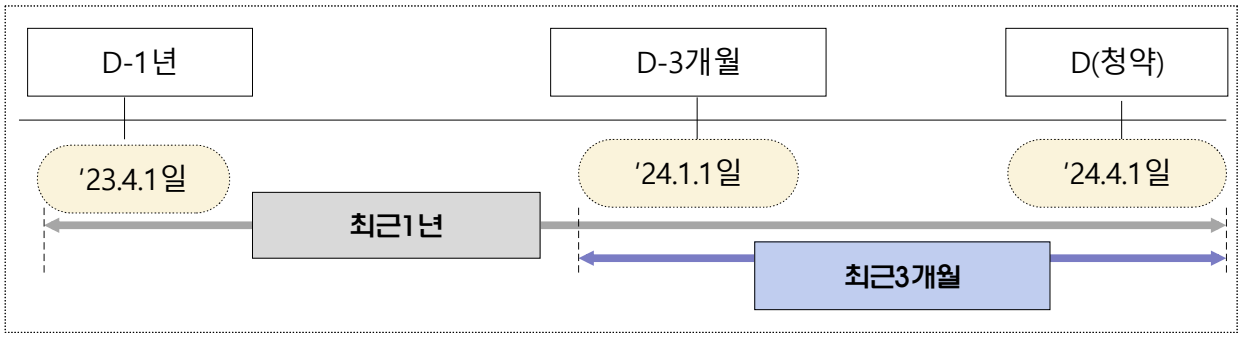

2 향후 계획

□ **단체보험**[개정사항 '나'] 관련 개선사항(은 **'25.1.1. 보험약관**부터 시행되고,

○ **보험금 대리청구**[개정사항 '가'], **직업변경 정산금**[개정사항 '다'], **직권해지 지연이자**[개정사항 '라'], **고지대상 기간**[개정사항 '마'] 관련 개선사항은 **'25.4.1. 보험약관**부터 적용 예정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://www.fss.or.kr)